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3.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22일 구청장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2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사회) 제1차 위원회 (1995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박충희)

- 가. 제안이유
'95. 1. 1 시행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
 - 건설기계의 재산세 부과 및 감면신청 규정 삭제
 -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관련규정 정리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대현)

'94. 12. 22 법률 제4794호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이 각 시·도·군 자치구세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달된 개정준칙(안)이 '95. 2. 14일자 서울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시달된 자치구세조례중 개정준칙(안)에 따라 현행 영등포구조례 제7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9조, 제33조의 내용 일부를 개정 정비하고, 현행조례 제24조, 제28조, 제31조를 삭제하는 개정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308 |
|----------|-----|

제출년월일 : 1995.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95. 1. 1 기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안 제7조)
- 나. 건설기계의 재산세 부과 및 감면신청 규정 삭제(안 제17조)
- 다.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 발췌 :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66조(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나. 예산조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 개정안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전"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납기한의 연장이"를 "기한의 연장이"로,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또 다시 납기한의”를 “또다시 기한의”로, “납기한의 연장 기한내”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납기한을”을 “다시”로 하며,
동조 제5항중 “납기한의”를 “신고납기한의”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을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으로 하고,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법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며, 동조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한다”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를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를 “비과세대상토지”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

과세 적용자”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p> <p>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22조(증과대상지역)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 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24조(증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5.(생략)</p> <p>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 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4.(생략)</p> <p>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p> <p>①(생략)</p> <p>②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 <p>6.</p> <p>제19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호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2.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p>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22조(증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p> <p><삭 제></p> <p><삭 제></p> <p>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p> <p>①(현행과 같음)</p> <p>②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p> <p>..... 비과세</p> <p>..... 비과세</p> |

| 현 행 | 개 정(안) |
|---|--|
| <p>제32조(납기) ①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3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p>1.~6.(생 략)</p> | <p><삭 제></p> <p>제33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p> <p>.....</p> <p>비과세 받고자.....</p> <p>.....</p> <p>.....</p> <p>.....</p> <p>.....</p> <p>.....</p> <p>1.~6.(현행과 같음)</p> |